



# 지급보증서

보증 번호:PEBSEL000378

보증처 : 프라다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 재화구매자들

주채무자 명칭 : 프라다코리아 유한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39

보증한도액 : KRW250,000,000 (금이억오천만원정)

보증기간 : 2020년 08월 25일부터 2021년 08월 24일까지

### 피보증 채무의 내용

- 1) 보증기간 동안 프라다가 운영하는 프라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보증처의 구매 주문 취소 요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그리고
- 2) 프라다가 운영하는 프라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보증처가 구매한 프라다 재화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

상기 중 어떠한 경우이든 프라다 공식 온라인 스토어의 판매 약관을 준수합니다 ("피보증 채무").

보증서에 따른 청구: 보증처는, 보증 기간 중에 프라다가 피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유")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 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 보증기간 만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본 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보증서에 첨부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보증처 용) 제 3 조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당행")이 본 보증서의 조건에 의하여 보증처에 지급을 한 경우, 이후에 다른 보증처에 의한 이행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지급액 만큼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액은 감액됩니다

본 보증서에 따른 이행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증처가 채무 불이행 사유로 손해를 입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 2) 프라다가 작성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한 현금 환불 거절 확인서
- 3) 구매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등)
- 4) 본 보증서의 원본 또는 프라다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본 보증서의 사본

본 보증서에 따라 이행 청구를 한 보증처에 대한 지급은 청구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채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보증처의 청구에 대하여 본 보증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프라다가 피보증 채무를 불이행한 해당 프라다 재화의 구매를 위해 보증처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보증서에 따른 보증처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러한 추가 금액은 보증 한도금액 산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은 오로지 당행에 의해 대한민국 법률(시행령, 규정, 명령 및 포고를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집니다. 당행은 전쟁, 대한민국정부의 조치에 의한 환전 또는 이체의 제한, 징발, 강제 이체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 채무 불이행 및 이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UN, EU 또는 미국의 제재 목록에 등재된 자, 또는 해당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이콧 금지법, 테러리즘 금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미국 제재 법이나 홍콩 금융당국, 영국, 대한민국이 발표, 집행 및 이행하는 제재를 포함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자에게 본 보증서에 따른 자금 이체 및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보증서는 당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으며, 또한 관련 제한에 따라 보이콧 (Boycott), 제재(Sanctions) 또는 통상금지(Embargo)가 적용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습니다.

본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이에 첨부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보증처용)에 따라 당행은 주채무자의 피보증채무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본 보증서는 청구보증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758) 의 적용을 받으며,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합니다. 민법 제 436조의 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J R Yoon, GTRF

J W Kim, GTRF

2020년 08월 25일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보증처용)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은행, 보증신청인(이하 "신청인"), 지급보증의 상대방(이하 "보증처") 사이의 지급보증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은행"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 "지급보증"이란 신청인이 보증처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여신을 말합니다.

### 제 3 조 (보증금액)

지급보증서의 보증한도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은행은 보증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처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러한 추가 금액은 보증한도액 산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채무보증의 경우 분할상환조건에 따라 상환된 금액은 보증한도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제 4 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피보증채무에 한하여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보증서에 별도의 청구기일이 표시된 경우, 보증처는 청구기일에 따라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위하여 보증처는 원본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청인이 날인한 지급보증서 사본, 이행청구 관련 증빙 서류,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증채무 이행청구 대상 채무는 청구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피보증채무에 국한되며, 보증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금액, 청구시기, 기타 제반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은행이 조기지급 또는 과다지급을 한 경우 보증처는 은행에 조기 지급한 금액 전액 또는 과다 지급한 차액 및 해당금액에 대하여 은행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 (보증채무의 소멸)

은행의 보증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멸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
2. 피보증채무가 소멸된 때

### 제 6 조 (지급보증의 조건변경)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 또는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제 7 조 (지급보증의 해지)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지급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증기한 만료 전 지급보증 해지를 원할 경우 은행은 잔여기간에 대해 보증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 8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보증처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으로써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서 원본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제 9 조 (분실, 도난 또는 멸실)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0 조 (언어)

본 약관에 대하여 국문본과 영문본이 작성될 수 있고,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 제 11 조 (약관적용 및 교부)

1.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합니다.
3. 은행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거래 약정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교부합니다.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기재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증처가 접수한 때 은행은 보증처에게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

청구금액 : 금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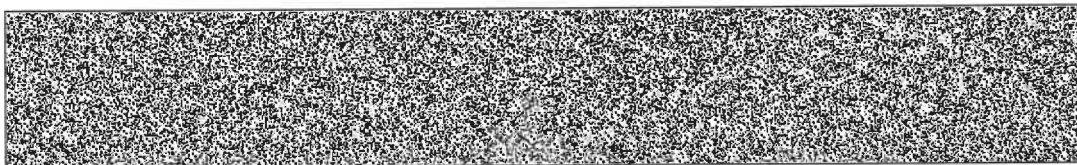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고 유 번 호 : 2009930-110916933  
(Certificate No.)  
수 입 인 지 금 액 : 10,000원  
(Stamp Duty Amount)  
성 명 ( 상 호 ) : 홍콩상하이은행  
( N a m e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1028400679  
(Registration No.)  
발 급 처 : 인터넷 / 신한은행  
(Stamping Channel)  
발 급 일 자 : 2020.08.24  
(Certificate Issued Date)

기획재정부 장관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copy)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사용 방법 >

\* 전자수입인지는 1회 출력만 가능하며(프린터 시험인쇄 요망), 제출서류 1건의 과세금액을 1매로 첨부(添附)하여 사용합니다.

### < 전자적 소인 처리 방법 >

\*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한 공무원의 전자적 소인처리 절차는 gov.e-revenuestamp.kr에서 수행)

\*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간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적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재사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사용 및 환매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소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환매 방법 >

\*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구입처에 환매(액면금액의 97%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및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